

# 경북스포츠과학센터 운영규정

제정 2023.12.28.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수 육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스포츠과학센터를 운영하여 우수선수 발굴 및 경기력과 지도력 향상, 스포츠 과학화, 스포츠 발전에 기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은 경상북도체육회 경북스포츠과학센터 운영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용하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사무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2장 명칭 및 소재

**제3조(명칭 및 소재)** 본 센터는 경북스포츠과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소재지는 경상북도 내에 둔다.

## 제3장 조직 및 복무

**제4조(구성)** 본 센터에는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센터장 1명
- 선임연구원 1명
- 연구원 2명
- 측정원
- 행정전담직원(체육회 직원 또는 센터 직원 중 임명)
- 그 외 지원인력

**제5조(직무)** 본 센터 직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센터장은 센터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선임연구원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연구원을 관리하며 연구활동과 체력측정 업무를 수행한다.
- 연구원은 센터의 업무분장에서 결정한 제반 연구활동과 체력측정 업무를 수행한다.
- 측정원은 체력측정 보조업무 등 센터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행정전담직원은 센터의 행정 사무 업무를 지원한다.
- 그 외 지원인력은 센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제6조(센터의 기능)**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수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2. 선수 밀착지원 및 현장지원
3. 스포츠과학교실 운영
4. 기타 관련 행정업무 등 소관 업무

**제7조(채용)** 본 센터 직원의 채용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지역스포츠과학거점 운영 사업 운영지침[스포츠과학센터 직원 자격요건 및 채용방법]과 체육회 인사규정에 준한다.

**제8조(보수 및 복리후생)** 본 센터 직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선임연구원, 연구원, 측정원의 보수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지역스포츠과학거점 운영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며 체육회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행정전담직원 및 그 외 지원인력의 보수 및 복리후생비 등은 체육회 보수규정 및 여비규정에 준하며 체육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복무)** 본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8장(복무)에 준한다.

**제10조(직원평가 및 내부승진)** 본 센터 직원은 정기적으로 연 1회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며 세부조항은 별도로 정한다. 또한, 선임연구원의 퇴사 등 공석 발생 시 근무 중인 연구원을 대상으로 내부공모를 통한 채용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지역스포츠과학거점 운영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 제4장 사 업

**제11조(사업)** 본 센터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엘리트선수의 스포츠 과학화 및 스포츠 발전에 관한 사업
3. 스포츠과학운영위원회 운영
4. 일반/밀착지원 사업 운영
5. 스포츠과학교실 운영
6.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공개강연회, 세미나, 워크숍 등에 관한 사업
7.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사업 자료의 개발 및 보급
8.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와 학술교류
9.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사업 및 연구사업
10. 기타 경상북도 체육발전 및 센터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제반사업 등

## 제5장 스포츠과학운영위원회

**제1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로 스포츠과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며 회장이 위촉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
4. 위원은 체육관련 분야 및 스포츠과학 전문가 등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 중 당연직은 체육회 사무처장, 경상북도 체육진흥과장,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담당 연구위원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본 센터의 센터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 일은 정기총회 일 전날까지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재 위촉되지 않으면 해촉된것으로 본다.

**제14조(위원회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밀착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선수 경기력 향상 관련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운영)** ①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은 제14조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시키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본 위원회가 의결할 의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그리고 대면회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결의 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의 비공개와 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석자는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 및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체육회 임직원 및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담당 연구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재정)** 본 센터의 경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교부금과 체육회 예산 등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계)** 본 센터의 예산 및 회계는 체육회 사무처운영규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정산지침에 따른다.

## **제7장 기타**

**제20조(상호협력)** 본 센터는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협의회 구성 및 지원 협력할 수 있다.

## **부 칙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